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2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 의 자 : 김도운, 이명녀, 박경흠, 정재환, 문희성, 홍영진, 강혜순, 김태욱, 문기호 안영호

1. 제정이유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제한 등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모자보건법」 제3조

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3. 11. 3. ~ 11. 10.(8일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4. 출생증명서
5.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7. 지원대상 증빙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지원대상자 (신청인)	부		생 년 월 일		
	모		생 년 월 일		
신 생 아	성 명		성 별		
	산후조리원명				
	소 재 지		출생일자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 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소 재 지		전화번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관 련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

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건강관리과

○ 직　급: 지방보건주사

○ 이　름: 조현정

○ 연락처: 290-4341